

# 2026년 5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

## □ 개요

2026년 5월 29일 공포된 '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(고용노동부령 제470호)'은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·절차 및 중대산업사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### 1.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구체화

- 1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: 근로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.
- 2) 위험성 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 : 파악된 요인의 위험성 크기를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, 허용 불가 시 즉각 개선대책 수립·이행
- 3) 근로자 참여 확대 : 사업장 순회 점검, 설문조사, 인터뷰 등을 통해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, 참여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후 의견 수렴 진행


### 2.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

- 1) 조사 범위 확대 : 기존 사망사고 중심에서 화재·폭발,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재해 원인조사 대상이 확대
- 2)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,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.

## □ 참고 (2월 19일 산안법 개정내용 / '26.6.1부 시행)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
제36조 개정 / 신설 (위험성평가 실시)	1. 위험성평가지 반드시 근로자 참여 2. 안전보건교육/설명회/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. 3.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유해위험 요인은 TBM등을 통해 상시 주지 4. 위험성평가 미실시, 근로자참여/교육/설명회/게시 등 주요절차 누락, 결과 미보존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(50인 이상 27년 / 50인 미만 28년 부 적용)

### ※ 과태료 세부 내용

위반 내용	과태료 
위험성평가 미실시	1,000만원 이하
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	500만원 이하
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미공유	500만원 이하
기록·보존 의무 위반	300만원 이하(예정 기준 안내)